손해보험의 이해 4: 책임준비금

김동겸 선임연구원

■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책임, 즉 미래의 지급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를 의미함.

-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각 시점에서의 지급부족액을 충당할 목적으로 미래 보험금 지급재원인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담보능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수지의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음.
- 책임준비금은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보증준비금 등으로 구성됨.

■ 첫째, 지급준비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금액이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함.

- 지급준비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준비금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장래손해조사비[1] 등으로 구성됨.
  - 개별추산액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고 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보고한 손해에 대한 준비금임.
  -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지급 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 등으로 구성됨.
- 한편, 지급준비금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개별 추산법, 평균지급보험금 방식, 손해율 평가법, 지급보험금진전추이 방식 등이 있음.

1) 장래손해조사비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향후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임.

■ 둘째, 보험료적립금은 보험회사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계약 상의 책임 즉,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함.

- 보험료적립금은 보험계약자가 그 동안 납입한 저축보험료에 예정이율로 부리된 이자부분을 가산한 금액과 평준보험료의 납입으로 인해 자연보험료 초과부분을 적립한 금액으로, 적립방법으로는 순보험료식 준비금, 질머식(Zillmer) 준비금,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이 있음.[2]
  – 순보험료식 준비금은 계약 초기에 집행되는 신계약비를 고려하지 않고 적립하는 준비금인 반면, 질머식 준비금은 순보험료 이외에 신계약비를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방식임.
  – 한편,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순보험료식 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하고 적립하게 됨.

■ 셋째, 미경과보험적립금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반환금의 성격을 지님.

-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주로 연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발생하며, 일시납인 경우 미경과보험료분을 포함하여 보험료적립금을 산출함에 따라 미경과보험료를 따로 계상하지 않음.

■ 넷째,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계약자 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당해연도의 배당소요액을 의미함.

- 보험회사는 유배당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계약자의 몫으로 배분된 계약자 지분[3]에 대해 배당보험 손실보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함.
  – 손실보전준비금이란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이후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30% 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이 가능함.
  –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회사 이익잉여금의 발생원천[4]에 따라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등으로 구성됨.

---

2)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해 순보험료식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해 주주지분은 10% 이하로 하고 잔여부분(90% 이상)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4)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위험률차손익, 예정이율과 실제이율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이자율차손익,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을 사업비차손익이라 함.